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정현
전화 043-299-4381

보 도 자 료
2025. 1. 9.(목)

제
목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련 청주시장 등 4명 기소
-청주시장,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前 대표이사, 시공사-
(현재까지 총 45명 기소 /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거나 피의자의 공개 요청이 있는 내용(제10조 제4항)
- ☑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2호)

-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오늘('25. 1. 9.)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 훼손과 관련하여 **청주시장,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하 '건설청장'), **시공사인 AOO(주) 前 대표이사 등 3명** 및 **시공사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양벌규정 적용
- 수사한 결과, **청주시장은**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 ①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하고, ②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하여 대응**하고, ③ **안전점검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하천 담당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청장**은 위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주체**이자, 위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하였고, ② **충분한 인력 확보 및 필요한 예산항목의 지정**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복구 지시 없이 기준 미달의 임시제방 축조를 용인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 **AOO(주)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을 직접 점유통제**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 ① 현장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②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③ **안전점검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본사 안전관리부서 직원들은 위 실태 점검 등 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현장 직원들은 공사차량 등이 편하게 드나들도록 제방을 불법 훼손한 후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결합되어 **불법 훼손된 이 사건 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하에 방치**됨으로써 총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재해가 초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로서,
 - ①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해 온 점, ② **지하차도 자체에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③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였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④ **지하차도 사전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피고인 (당시 직책)	공소사실 요지
1	이범석 (청주시장)	'22. 7.~'23. 7. ▲중대재해TF팀의 형식적 운용, ▲소관부서(하천과 국가하천팀)의 안전확보 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형식적 점검,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구체적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미수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미비 등 <u>안전·보건확보의무를 미이행</u> 하여, <u>제방 점검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무자격자 점검, 제방 점검 생략)을 방치</u> , 집중호우에 제방 붕괴로 하천수 유출, 피해자 14명 사망 등
2	이상래 (건설청장)	'22. 1.~'23. 7. ▲건설청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제외, ▲공사관리부서(광역도로과) 및 안전전담부서(사업관리총괄과)의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형식적 점검,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구체적 안전점검 계획 등 미수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미비 등 <u>안전·보건확보의무를 미이행</u> 하여, <u>공사관리 및 안전 전담부서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시공사 제방훼손 및 불법 임시제방 축조 묵인)을 방치</u> , 집중호우에 제방 붕괴로 하천수 유출, 피해자 14명 사망 등
3	가○○ [A○○(주) 대표이사]	'22. 1.~'23. 7. 공사현장 내 공중이용시설 훼손 및 이로 인한 시민재해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공중이용시설 현황 미파악 ▲시공현장 및 안전전담 부서의 시설 관리 실태 미점검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구체적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미수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미비 등 <u>안전·보건확보의무를 미이행</u> 하여, <u>현장 직원들의 불법행위(제방 무단 절개, 불법 임시제방 축조), 안전관리실의 부실한 업무수행(시민재해예방 업무 미수행)을 방치</u> , 집중호우에 제방 붕괴로 하천수 유출, 피해자 14명 사망 등
4	A○○(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벌규정 적용

2

수사 및 재판 경과

- '23. 7.15. / 21. 사고 발생 / 청주지검 수사본부 구성
- '23. 7. 24.~ 8. 11. 1~2차 압수수색(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 A○○ 등 20곳)
- '23. 9. 7.~12. 19. 3~6차 압수수색[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등 8곳]
- '23. 12. 8.~12. 감리단장 나○○, 현장소장 마○○ 각각 구속
- '23. 12. 22.~28. 감리단장 나○○, 현장소장 마○○ 각각 구속 기소

- ▶ '24. 5. 31. 1심 선고(현장소장 징역 7년 6월, 감리단장 징역 6년)
- ▶ '24. 12. 18. 2심 선고(현장소장 징역 6년, 감리단장 징역 4년)
※ 검찰 및 피고인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 '24. 2. 27. 시공사, 감리단, 건설청, 환경청 소속 16명(법인 2개) 불구속 기소
- '24. 3. 21. 前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14명, 前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 포함 16명 불구속 기소

- ▶ '25. 1. 8. 소방관 2명 1심 선고(前 청주서부소방서장 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前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4. 6. 19. 충청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포함 10명 불구속 기소
- '25. 1. 9.(오늘) 청주시장, 前 건설청장, 시공사 前 대표이사 및 법인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① 이 사건 제방의 훼손 방지, 원상복구 등 관리 책임 주체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장, 前 건설청장 및 A○○(주) 前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제방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고유의 역할과 의무를 부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청주시) 청주시장은 이 사건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유지·보수 사무의 주체

※ 이 사건 제방 유지·보수 사무는 하천법 및 관련 환경부 고시,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환경부장관 → 충북도지사 → 청주시장」에게 순차 위임됨

▲ 시설물안전법상 점검 실시의무(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 하천법상 상시 순찰, 불법점용 훼손 행위 단속, 훼손자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등 역할 담당

- (건설청) 건설청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주체,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하천점용허가의 수허가자, 광역도로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사무 주체

▲ 하천법 및 점용허가조건에 반하는 제방 등 시설 훼손 행위 단속, ▲ 행복도시법상 현장 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점검·개선 등 역할 담당

- (시공사) AOO(주)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주체이자 위 제방의 직접 점유자

▲ 공사계약상 하천점용허가 등 조건을 준수하고, ▲ 하천법상 공사 현장 내 제방 등 시설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② 청주시장, 건설청장, AOO(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경영책임자등'은 각 기관 또는 법인의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추상적 관리·감독 책임을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점검·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청주시장) 청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TF팀을 설치하였으나,
 - 청주시장은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

으로 배치해 서류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구비하는 형식적 임무만 부여하며, 각 공중이용시설별 소관부서의 안전점검 업무 실태에 대한 중대재해TF팀 차원의 실질적 점검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 즉, 하천·제방 담당 부서인 하천과가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21.경부터 안전점검 필수인력(기술자격자)도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등 위법·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하천과의 업무실태, 인력 및 예산 상황을 점검·개선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청장)** 건설청장은 건설청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제외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 그 결과 공사관리 부서 및 안전점검 부서의 공무원들 중 누구도 점용허가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채 불법 임시제방의 축조를 용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건설청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이 장마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 누구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는 등 건설청의 안전점검 업무가 형해화되어 있었습니다.

● **(시공사)** 시공사인 A○○(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안전보건실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 안전보건실은 공사현장 내 공중이용시설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중대시민재해예방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현장 직원들은 하천점용허가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방을 불법 훼손하고, 장마철에만 불법 임시제방 축조를 반복하였습니다.

㉓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차이점

- (쟁점)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청주시장과 충청북도지사의 혐의 유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시설	인력 및 예산	안전점검	긴급상황 대응
관리하는 공중 이용시설의 종류 및 기능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	법령상의 점검 의무 적정 이행 여부	긴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여부

- (청주시 : 제방 유지·보수 주체)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 ▲ ‘제방’에 물리적 결함(무단 절개) 및 관리상 결함(무자격자 점검, 제방 점검 누락)이 존재하는 점, ▲ 담당부서(국가하천팀)가 인력·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위와 같이 위법·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태와 원인에 대해 전혀 점검하지 않은 점, ▲ 중대재해TF팀은 시민재해 대응 인력이 단 1명으로 제방에 대한 구체적 점검 계획도 없이 문서 단순 취합 등 지극히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 이 사건 제방과 관련된 청주시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이 인정되어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 반면, 충청북도지사의 경우
 - ▲ 궁평2지하차도 자체의 물리적 결함은 없었고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지하차도 사전 통제 인력이 상당 규모 확보되어 있었으며, ▲ 집중호우시 지하차도 사전 통제 매뉴얼이 있었고, ▲ ‘23. 상반기에 훈련도 실시한 점에 비추어 사건 당일 지하차도 통제가 실시되지 않은 관리상 결함이 충청북도 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 위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침수시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예산 등 예산 확보 노력 또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이미 기소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7명은 ▲사고 전일·당일 재난신고 부실 대처, 지하차도 통제 미 실시 ▲사고 전 재해대책본부 상황관리 및 대응 부실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지하차도 자체의 설계·설치상의 결함과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은 없음

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① 종합 수사결과

- 검찰은 '23. 7.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현장조사, 기술 감정, 전문가들의 자문, 압수수색 및 관련자 300여 명 조사 등 다각도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① 시공사의 제방 훼손, ② 공사관리 및 하천 관리의 부실, ③ 재난대응 부실, ④ 사고 전과 사고 당일의 지하차도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였고,
- 청주시장, 건설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들이 이 사건 제방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방 훼손 후 원상회복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별첨1 이 사건 사고 개요 참조).
- 그에 따라, 책임이 있는 42명(법인 2개 포함)을 기소하여 재판 중이고, 오늘 (1. 9.)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3명과 시공사를 추가 기소함으로써 총 45명(법인 2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 ①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2명 구속 기소
- ② 청주시장, 건설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3명 불구속 기소
- ③ 건설청, 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서부소방서 공무원 34명 불구속 기소
- ④ 시공사 직원 2명, 감리단 직원 2명 및 법인 2개(시공사, 감리업체) 불구속 기소 (별첨2 피고인 및 죄명 참조)

※ '24. 12. 18.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심 계속 중 (2심에서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 감리단장에 대해 징역 4년 각 선고)

② 중대시민재해 사건 최초 기소

- 오늘 기소한 이 사건은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시민재해로 최초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기업이나 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시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일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겠다'라는 중대 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하여 철저한 법리 검토를 시행한 결과, 무고한 시민 30명의 사상을 초래한 경영책임자 3명을 직접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③ 향후 계획

- 향후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관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별첨 1] 이 사건 사고 개요
 [별첨 2] 피고인 및 죄명

이 사건 사고 개요

'23. 7. 15.(토) 08:35경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사망 14명, 상해 16명)

기관	주요 의무위반	수사결과
시공 · 감리	담당 직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2명 구속 기소 ▶공사팀장 등 6명 (법인 2개 포함) 불구속 기소
	시공사 대표이사	
건설청	담당 공무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광역도로과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건설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건설청장 불구속 기소
환경청	▶제방훼손 목인·방치 ▶비상근무 부실 수행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국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안전정책과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
충청북도	▶지하차도 통제 미 실시 ▶재해대책본부 상황관리 및 대응 부실 ▶7.14.~15.(사고 당일) 재난신고 부실 대처	[업무상과실치사상] ▶재난안전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충북 경찰청	▶지하차도 통제요청 신고 부실 대응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112상황실 근무자 등 6명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작성 등] ▶前 충청경찰청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 소방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

[별첨 2]

피고인 및 죄명

총 45명(법인 2개 포함)

연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비고
1	감리단 [(주)B○○ 등]	나○○ (감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23. 12. 22. 구속 기소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4년)
2		다○○ (공사담당)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3		라○○ (공무담당)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4		㈸B○○	하천법위반	
5	시공사 [A○○(주)]	마○○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23. 12. 28. 구속 기소 (1심 징역 7년 6월, 2심 징역 6년)
			하천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6		바○○ (공사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7		사○○ (공무팀장)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8		A○○(주)	하천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9		가○○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10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아○○ (광역도로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1		자○○ (광역도로과 사무관)	업무상과실치사상	
12		차○○ (광역도로과 주무관)	업무상과실치사상	
13		카○○ (사업관리총괄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4		타○○ (사업관리총괄과 주무관)	업무상과실치사상	
15		이상래 (건설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25. 1. 9. 불구속 기소

연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비고
16	금강유역환경청	파○○ (하천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7		하○○ (하천공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8		거○○ (하천공사과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9	충청북도경찰청	너○○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20		더○○ (공공안전부장, 경무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1		러○○ (경비과장, 총경)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동행사교사 등	
22		머○○ (경비과, 경정)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23		버○○ (경비과, 경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24		서○○ (112상황실, 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25		어○○ (112상황실, 경사)	업무상과실치사상	
26	청주흥덕경찰서	저○○ (청주흥덕경찰서장, 경무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동행사교사 등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27		처○○ (교통과장, 경정)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8		커○○ (112상황실, 경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29		터○○ (112상황실, 경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30	오송파출소	퍼○○ (순찰팀, 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1		허○○ (순찰팀, 경위)	업무상과실치사상	
32		고○○ (순찰팀, 경감)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33	청주서부소방서	노○○ (청주서부소방서장, 소방정)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4		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비고
35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로○○ (재난안전실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6			모○○ (자연재난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37			보○○ (자연재난대책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38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 (도로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9			오○○ (도로시설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0		도로관리 사업소	조○○ (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1			초○○ (도로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2	청주시	안전정책과	코○○ (안전정책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43			토○○ (자연재해대비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4		하천과	포○○ (국가하천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5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25. 1. 9. 불구속 기소